
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,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며, 회의록 공개 원칙 등을 규정함(안 제6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